

고기류

생등심	(국내산 한우 / 150g)	28,000
갈매기살	(국내산 / 150g)	10,000
왕갈비	(캐나다산 / 300g)	9,000
삼겹살	(국내산 / 200g)	8,000

식사류

갈비탕	(호주산)	6,000
뚝불고기	(호주산)	6,000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현재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고, 음식점의 경우에도 대형음식점(300m²이상)의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한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산물과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도입됐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주요 내용은?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 이 100m²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시기는?

- 쇠고기(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를 사용한 음식

- 2008년 7월 8일부터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300m²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이미 시행되어 왔음.
- 돼지고기 · 닭고기 조리 음식
 - 국내산 : 갈비(국내산), 삼겹살(국내산), 닭볶음탕(국내산), 삼계탕(국내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삼겹살(호주산), 삼계탕(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 섞음 : 갈비(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삼겹살(국내산과 호주산 섞음)
- ※ 국내산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산 육류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산 닭을 1개월 이상 사육하여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돼지고기 · 닭고기는 원산지와 수입국가명 표시(예 : 삼겹살 국내산(돼지 텐마크산))
- 쌀(밥류) : 쌀을 밥으로 조리한 것
 - 2008년 6월 22일부터 : 100m²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식사류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 2008년 12월 22일부터 : 100m²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3.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계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그 밖에 풋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00m²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계시판 또는 풋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할 수 있다.
 -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월간 메뉴판을 공개하고, 식당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계시하거나 풋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를 사용한 음식‘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 표시대상 음식점은?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 태의 음식물을 조리 · 판매(음주행위가 허용 안됨)
- 위탁급식소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 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 제공(OO푸 드 등)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 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5. 음식점 원산지 단속은 어떻게 하나?

- 대상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 · 표 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단속과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부정 유통신고를 접수한 때 등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단속현장에서는 우선 원산지 표시 여부 와 방법이 적정한가를 확인한 다음, 조 리하고 남은 원료 농 · 축산물의 원산지 를 육안으로 식별
- 원산지 표시 내용이 의심나는 경우 거래 내역을 토대로 추적 조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검정 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함.
 - 과학적 식별법 개발 : 87개 품목(쌀, 쇠 고기 유전자분석 포함)

6.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표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와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사항	과태료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 될 수 있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7.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자 신고시 포상금은?

-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 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이나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은 단속공 무원이 신고사실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 사한 후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이 확정 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